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11. 6(수)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3.11. 12(화)

다. 상정일자 : 2013.11. 12(화)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경제체육과장)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등 종사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 금번 개정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8시에서 0시부터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였으며,

매월 1일 또는 2일이던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또한 대규모 점포(쇼핑몰 등)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규제 제외대상 조건인 농수산물 매출비중 51%초과를 5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본 조례는 2013년 1월 23일(법률 제11626호) 개정되어 7월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위”를 “경영”으로, “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통시장을”을 “시장을”로 한다.

제3조 중 “균형있”을 “균형 있”으로 한다.

제5조 중 “사업활동”을 “사업 활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총체적”을 “전체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위원은”을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으로, “사람이”를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2. 군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 유통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 제목“(협의회회의 업무)”를“(협의회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

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는”을 “할”로 한다.

제13조 중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취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대규모점포등”을 각각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제14조제2항 중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로,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통질서확립”을 “유통질서 확립”으로,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영업시간”을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

포등”을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를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로, “조건등”을 “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등을”을 “조건 등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